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세션명	디지털 경제의 역차별 이슈: 구글세 이후의 세상			
일시	2017.9.15.(금) 10:45~12:1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1	
참석자	사회	강하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	하윤금(한국콘텐츠진흥원)
	패널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김종영(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최진웅(국회입법조사처)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플로어	안창남(강남대학교)			
플로어	약 30명 참여			

워크숍 취지	<p>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의 특성(고정사업장 불필요, 국경간 자유로운 거래, 데이터 이동 등)을 이용 조세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사 소재 사업장이 소득발생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소득의 원천이 되나,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 기준하에서 실제 소득의 원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p> <p>이와 관련하여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OECD BEPS 수립이나, 몇몇 유럽 국가에서의 세금 징수, 올 6월의 EU의 과징금 부과등이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p> <p>한국도 국회,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조세회피, 공정경쟁역차별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 상황분석 및 규제추진 검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다중 이해자의 토론을 추진하고자 함.</p> <p>동 워크숍에서는 조세, 공정경쟁뿐 아니라, 경제적 과급효과, 역차별 이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p>
--------	------------------------------------------------------------------------------------------------------------------------------------------------------------------------------------------------------------------------------------------------------------------------------------------------------------------------------------------------------------------------------------------------------------------------------------------------------------------------------------------------------------------

1. 구글세란?

- 유럽에서 구글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

(1) 개요

- 개념 :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구글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업, IT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저작권 침해 소송, 조세 회피 등에 대해 벌금/채납세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구글세로 통칭

(2) 종류

- 소송 : 반-독점 소송에서 불공정 거래 판결에 따른 벌금으로의 구글세
- 불공정 사용 : 콘텐츠 사용료/저작권료에 대해 세금형태 징수 목적 구글세
- 조세회피에 따른 구글세 : 주로 법인세 관점에서의 구글세와 부가세 관점에서의 구글세

(3) 쟁점

- Data storage : Data governance 이슈
- Privacy laws :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등

- National Security : 중국, 러시아 등

2. 구글세 논의 배경

(1) 독과점 문제 - 인터넷 환경 문제

- 유럽각국에서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과점 문제제기
- 구글 검색서비스 우선, 검색순위 조작 등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행위
- 온라인검색 장악력이 높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에 포함된 제품 정보 우선 표시
- EU는 2010년 7월부터 불공정 행위 조사,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내림
- 구글은 개선안 제시하여 합의 종결(2013.4.), 그러나 유럽 반발

(2) 독과점 문제 - 모바일 환경

- 안드로이드 자체가 불공정 행위를 강요
- 구글 자사 앱 의무적 선택재 문제
- EC는 2013년부터 구글의 모바일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 앱토이드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EU제소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OS, 광고 서비스 AdSense에 대해서도 반독점 행위 조사 진행 중

(3) 저작권 문제

- 2000년대 중후반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저작권 소송
- (프랑스) 언론이 침해 소송 제기, 콘텐츠 이용료와 사이트 접속 지원금 제공, 저작권료나 조세형태는 막으려 하는 제스처
- (벨기에) 벨기에언론협회의 제소, 구글 패소, 이후 구글이 화해하고 종이매체의 디지털 진화 지원 약속
- (독일) 저작권법 개정 법안 발의,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업자가 발췌를 노출할 경우 로열티 제공하는 보조 저작권 개념 도입, 그러나 기준 불명확과 유/무료 저작권료 기준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졌고 신문기사의 구글 등록을 자발적 선택으로 바꾼 결과 모두 다시 등록
- (스페인) 스페인 신문협회 AEDE가 구글의 보상 없는 뉴스 사용에 대해 불만 제기, 독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지적재산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발췌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지불 의무화

(4) 조세회피 문제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세수 증대를 위해 인터넷,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 탈루 문제화
- 법인세율이 적은 나라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조세회피 대책 마련
- 대안
 - (가) 직접세(법인세)
 - (나) 간접세(부가세)
- 프랑스 : 온라인 광고세로 광고비용의 1%를 조세로 부과, 그러나 다국적 광고회사의 경우 조세회피 가능, 실제 부담은 자국 중소형 광고회사로 이전됨.
- 호주 : 구글을 통해 광고하는 호주 기업의 광고는 Google Australia와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호주 세법에 따른 세금 부과, 약 10배 가량 법인세가 증가했으나, 검색서비스 매출은 싱가포르로 이전
- 일본 : 소비세 부과 방침을 밝혔음. 과세기준을 서비스 제공기업 소재지에서 서비스 이용 소비처로 변경되며 해외 세무당국과 공조 예정

(5) 진척

- 반독점 소송 : 3가지 쟁점으로, 검색 서비스 문제(인터넷), 안드로이드 문제(모바일), 광고 서비스 문제, 아직 벌금을 물리기에 이르고, 부족한 면이 존재

- 저작권 문제 : 정보세, 스페인 저작권법에 도입된 세금제도 기반으로 진행 중
- 조세회피 문제 : 각 국가별 대처 방안 마련, 국제적 공조 체계로 조금씩 진척 중

3. 국내 구글세 논의

(1) 불공정 경쟁 - 역차별

-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 이용이나 콘텐츠 활용규제의 제약이 많음
-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2) 저작권 관점 구글세

- 국내에서는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논의 없음

(3) 조세회피 문제

- 국내에서 광고 매출 관련 세금 납부하고 있고 탈세는 없다는 입장, 외부감사와 공시의무 없음
- 법인세법 개정안 논의, 고정 사업장 문제 존재
- 부가세 문제는 이미 논의 완료

4. 패널 토론 및 결론

(1) 기타 쟁점

- Data storage and privacy laws :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 정보가 자원이 되는 시대에 자원 보호를 위해 해야 함.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로, EU와 US는 privacyshield 채택,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함
- National security :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한 수단, 문화 제국주의 문제

패널별 의견

(최성진 패널 - 산업계)

- 역차별 문제를 잘 바라봐야 함. 구글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옹호하거나 키우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각 사회의 맥락을 이해해야 함
- 유럽은 자국 플랫폼 초토화 상황에서, 이용자와 플랫폼 보호를 위해 적용됨
- 중국의 경우 차별을 둬 : 외국기업 배척
- 우리나라는 두 방법과 다르게, 국내 인터넷 산업이 튼튼하고, 역차별 환경 때문에 힘겹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려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게 됨
- 국내 규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진행해야 함
- 그렇지만 기업에게 꼭 필요한 규제는 정부가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

(김보라미 패널 - 시민사회)

- 데이터 저장 문제에 있어서 국내법에서는 강력한 동의를 받아야 함
- NGO 측에서 구글을 소송 결과, 미국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고, 구글

코리아는 본사와 관련 없음을 밝힘

-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 ISSUE가 있음
- NGO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함

(김현경 패널 - 학계)

-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로 옮겨가는 이유 : 국내 유튜브 동영상 광고비가 네이버의 2.5배, 방송3사 총합의 5배로, 이 이면에는 잘못된 거래 규제가 있음
- 한국에서 구글은 망 사용료 지불 안 함
- 국내포털은 수익구조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부당 차별적 취급을 받음
- 내국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 필요

(안창남 패널 - 학계)

- 앞으로 사회는 구글 대 나머지 기업 체제가 될 것
- 조세 규정을 보면, 고정 사업장에 대한 회피 방법이 충분히 존재
- 부가세는 현재 입법 조치 완료, 소득세가 문제가 됨
- 전 세계적으로 범용화될 수 있는 TOOL 필요

(최진웅 패널 - 공공계)

- 글로벌 스탠드에 적절하게 가고,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는 상호적 규제 필요
- 법인세의 경우 개정안이 없음, 이유는 원천소득 과세를 위해 고정 사업장이 필요 하나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해외까지 함께 변화해야 하기 때문
- 반독점 규제 문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문제로, 과거에는 망 사업자였으나 이제는 부가통신업자들이 커져서 남용 행위를 차단하는 식으로 평가해야 함. 포털의 영향력이 세지더라도 포털을 겨냥한 규제 제정보다는 현재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정기적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임
- 저작권 문제는 국내 구글세가 진행되면, 누구에게 이득일지에 대한 의문. 현재 저작권 문제없이 해도 이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
-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콘텐츠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해외로 나갈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

(김중영 패널 - 공공계)

-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여러 부분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집행력이 확대되어야 함
-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보완으로 국내든 외국이든 적용되도록 보완 된 상황

(하윤금 발제자)

- 법인세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연말에 김해영 의원이 발의 예정.

- 현재 OECD 법인세 가이드라인 존재
- 지속적인 정보 사회에서는 앞선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여론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